

의안번호	2218406
의 퇴 인	임미애의원
회 답 일	2026. 6. 22.
추계번호	26C22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제6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¹⁾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하여야 함	
2	안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하여야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제6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1)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 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2. 상세 사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무 배치 (안 제29조제6항 및 안 제32조제6항)
-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모든 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자격 소지자로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무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2026. 3. 31. 기준)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계	일시	단기	중장기			
개소수 (개)	138	33	67	38	13	18	240

자료: 성평등가족부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과장 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